

문서번호	○○실-4924		차장	감사2부장	감사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18.10.31.		협 조			
공개여부	공개					

## 컨설팅 성과감사 결과보고

— 소방안전관리 업무처리개선 —

2018. 10. 31



# 목 차

<b>I . 감사실시 개요</b> .....	<b>1</b>
1. 감사배경 및 목적 .....	1
2. 감사대상 및 범위 .....	1
3. 감사기간 및 인원 .....	2
4. 감사중점사항 .....	2
<b>II . 감사결과</b> .....	<b>2</b>
1. 총평 .....	2
2. 관련규정 .....	4
3. 감사결과 .....	5
4. 감사자 의견 .....	13
<b>III .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b> .....	<b>14</b>
1. 처분요구 일람표 .....	14
<b>IV . 기타사항</b> .....	<b>14</b>

## 소방안전관리 업무처리개선 컨설팅 감사 결과보고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공사정책의 일관성 및 계획의 적정성과 부동산 등 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점검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따른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성과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I. 감사실시 개요

#### 1. 감사배경 및 목적

이번 감사는 공사 소방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계획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수립·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매뉴얼에 따른 관련 부동산에 대한 소방계획 수립 여부 및 ♠사 담당부서 관리체계를 분석 확인하여, 현장에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옴부즈만 위원과 소방안전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공사 소방안전 관리에 관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함

#### 2. 감사대상 및 범위

이번 감사는 건축 연면적 1,000㎡ 이상 및 자동화재 탐지설비,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소방안전 관리자가 선임된 전국 31개 기관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관리 정책 수립, 소방안전관리 업무 매뉴얼에 따른 현장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업무 담당자 선정 및 화재 등에 따른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 3. 감사기간 및 인원

이번 감사는 2018. 10. 11.(목)부터 같은 해 10. 12.(금) 2일간 LX 옴부즈만 1인, 소방분야 외부전문가 1인, 감사실 직원 2명이 화재가 발생한 2개 지역본부와 1개 지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의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4. 감사중점 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의 주요 의무 이행사항인 소방안전관리 정책 수립의 적정성 등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사고 대비 소방안전관리업무 매뉴얼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하였다.

## II. 감사결과

### 1. 총평

이번 「소방안전관리 업무처리개선 컨설팅 성과감사」 결과 소방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직원은 신분상 조치(문책: 주의)와 공사 소방 안전 관리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한 매뉴얼을 현행화 할 필요가 있고, 자율 안전체계를 강화하고 대상 기관의 소방계획을 총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대한 교육과 확인이 필요하며, ◇◇

지역본부는 현장점검 시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받은 자동확산 소화기 추가 설치와 자동화재탐지설비, 방화문, 피난기구, 피난안내도 등 지적사항을 보수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

[표 1] 분야별 지적사항

구분	합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통보	시정	개선	권고	추징	회수	징계	문책
소방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업무처리 소홀	1								1
화재발생에 따른 사후관리 및 소방안전관리 매뉴얼 정비	1				1				
소방계획 관리 소홀	1	1							
소방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			1					
합계	4	1		1	1				1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 ◆◆◆◆부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에 반드시 작성해야할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소방교육과 자위소방조직 구성 등 일부 사항만 미흡하게 작성

(소방안전관리 계획수입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 ◆◆◆◆부 소방안전관리자는 현황파악분야, 업무분야, 역량강화분야 실태점검분야로 소방계획 수립하였으나, 계획으로만 그치는 등 현황파악과 실태점검을 소홀히 함

(화재발생 기관에 대한 사후조치 및 대책마련 관련)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본부 ■■지사 등에서 발생한 3건의 화재에 대하여 ♠사 ◆◆◆◆부 소방안전관리자는 사후 조치 등 구체적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함

2. 화재발생 사후관리 및 소방안전관리 매뉴얼 개선

(화재발생에 따른 사후관리 소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화재가 발생한

□□지역본부 ■■지사외 3개 기관은 화재발생 후 화재원인, 자산피해내용, 복구비용, 향후대책 등에 대한 결과보고를 누락하였고, ♠사 ◆◆◆◆부 또한 관리방안 없이 자산 관리를 소홀히 함

(소방안전관리 매뉴얼 현행화 소홀) 소방안전관리자가 매월 실시하는 소방 외관시설 점검을 감사일 현재까지도 2017.7.26.변경전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컨설팅을 통한 구체적인 매뉴얼 개선이 요구됨

### 3. 소방계획 관리소홀

31개 대상 기관중 23개 기관만 소방계획수립하였고 수립한 기관도 반드시 포함 작성할 13가지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등 소방계획 수립 관리 소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리 소홀) 31개 대상 기관중 10개 기관만 감독직 직원을 선임하는 등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리 소홀

(자위소방대 편성 관리 소홀) 31개 대상 기관중 23개 기관만 편성하였고 편성한 기관도 소방안전관리자를 11개 기관만 지휘반에 배치하는 등 자위소방대 편성 관리 소홀

### 4. 소방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지역본부의 경우, 3,4층 가스보일러 주변 화재 위험이 있어 자동확산 소화기 추가 설치 필요 등 소방안전관리 미흡

## 2. 관련규정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기관장의 책임),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제13조(자위소방대의 임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및 시행령 제24조(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부동산 관리규칙」 제21조(권리보전 등)

### 3. 감사결과

#### 가. 소방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업무처리 소홀 \_ 문책요구

##### 1) 소방계획 수립 소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기관장의 책임) 제2항에 “기관장은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 있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제1항에 따라 소방계획서는 13가지 사항<sup>1)</sup>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에서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시행한 소방계획서의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화재의 예방, 제3장 화재 진압, 제4장 소방안전관리 일반, 제5장 벌칙으로 되어 있으며 제1조 (목적)에서 부터 제18조 (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등) 으로 구성하여 소방과 관련된 법조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제1항에 따라 소방계획서는 13가지 사항을 포함해서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 2]와 같이 2018년도 소방계획서를 미흡하게 작성하였다.

1)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① 소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8.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9.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입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표 2] 2018년도 ♠사 소방계획서 작성내용

구 분	작성여부		비고
	포함	미포함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일반현황	○		
2. 소방 및 방화시설 등 현황(전기,가스,위험물시설 포함)	○		
3. 자체점검계획 및 화재진압대책	○		
4. 소방/피난·방화시설 점검·정비계획		○	
5. 피난계획(재해약자 피난대책 포함)	○		
6. 방화구획, 제연구획, 마감재료 방염물품, 방화구조/설비 관리계획		○	
7. 소방교육 및 훈련 계획	○		
8. 자위소방조직 구성 및 임무부여(재해약자 피난보조 임무 포함)	○		
9.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사항		○	
10. 공동/분임 소방안전관리		○	
11. 소화 및 연소방지 관련사항		○	
12. 위험물 저장/취급 사항	○		
13. 기타 사항		○	

## 2) 소방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점검 소홀

♠사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중기(’15 ~ ’19) 경영계획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사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립한 소방안전관리 계획은 현황파악 분야는 각 기관별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파악과 소방시설 자료취합, 소방훈련 점검실적을 취합하고, 업무분야는 소방안전관리 매뉴얼 업데이트 및 배포, 교육자료 배포, 각 기관 소방시설 점검이며, 역량강화 분야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재와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기관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실태점검 분야는 2016년도에 1회 수립하였으며 부동산 관리계획 현장 점검 시 병행 실시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한편 ♠사는 2017년도 소방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2018년도 소방안전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는 감사일 현재 각 기관별 소방안전관리자 현황은 조사하였으나 각 기관별 소방시설 자료, 소방훈련 및 점검실적을 조사하지 않았으며, 소방안전관리 매뉴얼 업데이트 자료 배포와 소방안전 교육 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 매년 시행하는 “소방안전관리 계획”은 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 현황 파악이나 교육 자료 배포 정도로 소방안전을 위한 포괄적이면서도 상세한 안전계획이 부족하다.

### 3) 화재발생기관 사후조치 및 대책마련 소홀

2017. 6. 26. □□지역본부 ■■■지사 4층 옥탑 샤워실(불법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2018. 4. 12. □□지역본부 △△지사 1층 외부 창고(불법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2018. 7. 29. ◇◇지역본부 4층 회의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3개월 사이 화재가 3건이나 발생하였다. 이중 외부 불법건축물에서 화재가 2건이나 발생하였으나 공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김♣♣는 ◇◇지역본부 화재 시에만 지역본부에 전화로 화재 상황을 확인 하였을 뿐 별다른 확인이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소방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나. 화재발생에 따른 사후관리 및 소방안전관리 매뉴얼 정비 \_ 권고

### 1) 화재발생에 따른 사후관리 소홀

「부동산관리규칙」제21조(권리보전 등)③항 분임책임자는 화재,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 등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이 훼손 또는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피해 정도 등의 내용을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에서는 [표 3]과 같이 201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3건의 화재사고가 있었으며, 2018년 7월 ◇◇지역본부 4층회의실, 2018년 4월 경기 △△지사 1층 외부창고, 2017년 6월 경기 ■■지사 4층 옥탑 샤워실에서 화재사고가 발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표 3] 화재발생 현황

일시	'18. 7. 29.(일) 09:20분	'18. 4. 12.(목) 13:20분	'17. 6. 26.(월) 22:35분
관련기관	◇◇지역본부	경기 △△지사	경기 ■■지사
장소	4층 회의실	1층 외부창고	4층 옥탑샤워실
화재발생보고	'18. 8. 2.	'18. 4. 12.	'17. 6. 28.
특이사항	초등대응 적절	불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
결과보고	없음	없음	없음

그런데도 화재발생 후 화재발생원인, 자산피해내용, 복구비용, 특이사항, 향후 대책 등에 대한 결과보고가 없었으며, ♠사 업무담당자 또한 화재발생에 따른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았다.

그 결과 공사의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부에서는 화재발생등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 없이 자산관리를 소홀하게 운영하고 있다.

## 2) 소방안전관리 매뉴얼 현행화 소홀

공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916호)」에 따라 ♠사, 지역본부 및 지사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매뉴얼」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에서 외관점검(소방시설 점검)은 보통 소방안전관리자가 실시하며, 매월 1회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한다고 되어 있으며, 붙임 3. 「공공기관 소방시설자체점검 등에 관한 고시」

외관점검표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7. 7. 26. 소방시설 외관점검표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화되지 않아 ♠사, 본부 및 지사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이전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그대로 이용하여 점검하고 있다.

또한 외부전문가로부터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컨설팅 등을 통해 공사 소방안전계획 및 매뉴얼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다. 소방계획 관리 소홀 \_ 통보

##### 1) 소방계획 수립 사항 관리 소홀

소방계획 수립대상<sup>2)</sup> 31개 기관 중 [표 4]와 같이 23개 기관(74.1%)만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였고 8개 기관(25.8%)이 미작성 하였으며, 작성한 기관 또한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2·3급 규모)서식으로 작성하지 않아 통일성이 없고, 소방계획서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13가지 항목 중 특히 중요한 피난계획이 13개 기관(56.5%)만 작성되어, 화재발생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안내 역할이 없어 인사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표 4] 기관별 소방계획서 작성현황 집계

(2018. 9. 30.일 현재, 단위:소)

구 분	소방계획서 작성			피난계획도 작성			비고
	계	작성	미작성	소계	작성	미작성	
소방계획	31	23 (74.1%)	8 (25.8%)	23	13(56.5%)	10(43.5%)	

2) 연면적 1,000㎡ 이상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설비(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가 있는 기관

## 가)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관리 소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제1항에 따르면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표 5]와 같이 전체 31개 기관 중 감독직에 있는 직원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기관의 비율은 10개 기관(32.3%)이고, 비 감독자로 볼 수 있는 직원 선임이 21개 기관(67.7%)으로 화재발생 시 총괄 지휘 통제에 한계와 전문성 미흡으로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5] 기관별 소방안전관리자 직급 현황집계

(2018. 9. 30.일 현재, 단위: 소)

구 분	소방안전관리자 직급										
	계	감독 직급				비감독 직급					
		소계	**** 처장	@@장	&&&장	소계	#장	☆장	★장	대리	사원
소방안전 관리자	31	10 (32.3%)	4 (12.9%)	2 (6.5%)	4 (12.9%)	21 (67.7%)	6 (19.4%)	9 (29.0%)	2 (6.5%)	1 (3.2%)	3 (9.7%)

## 나) 자위소방대 편성 관리 소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6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발생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위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자위소방대의 임무)<sup>3)</sup>

3) 제13조(자위소방대의 임무) 자위소방대의 대장·부대장과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영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4. 진압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5. 구조구급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응급처치한다.
6. 대피유도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제3호에 따르면 “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는 지휘반에 편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표 6]과 같이 31개 대상기관 중 23개 기관(74.1%)만 자위소방대를 편성하였고, 8개 기관(25.8%)이 미편성 하였으며, 편성한 기관도 소방안전 관리자를 11개 기관(47.8%)만 지휘반에 배치하여,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기관별 자위소방대 편성현황 집계

(2018. 9. 30.일 현재, 단위:소)

구 분	자위소방대편성			소방안전관리자 편성현황			비고
	계	편성	미편성	소계	지휘반	비 지휘반	
자위소방대편성	31	23 (74.1%)	8 (25.8%)	23	11 (47.8%)	12 (52.1%)	

따라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발생시 초기 자율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 라. 소방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_ 개선

◇◇지역본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소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본부는 2018년도 소방계획을 수립하여 2018. 3.에 외주업체를 통해 종합정밀점검과 같은 해 9월에 외주업체에게 작동기능점검을 받고, 외관점검은

매월 자체점검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 [표 7]과 같이 소방안전 점검 결과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연간 2회씩 소방안전점검을 하였으나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곳에 초동대응 준비가 미비하고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감지기 배선을 하는 등 소방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7] 지적사항

지적사항	화재안전기준
○ 소화기 - 자동확산 소화기 미설치로 3, 4층 가스보일러 주변 화재 위험으로 자동확산 소화기 추가 설치 또는 계획에 따른 가스보일러 제거	NFSC* 101 제4조
○ 자동화재탐지설비 - 감지기 배선은 송배전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으로 확인, 전층(지하1층 ~ 지상 4층) 감지기 선로에 대한 보수 필요	NFSC 203 제11조
○ 피난기구 - 완강기는 사용 시 신속하고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하나 그렇지 못함(3, 4층 재설치 필요)	NFSC 301 제4조
○ 유도등 - 유도등은 피난방화문에 설치해야 하나 2층 처장실 좌측 문입구 피난구 유도등은 불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제거 요함	NFSC 303 제4조
○ 방화문 - 방화문은 화재 시 자동으로 닫혀 폐쇄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나 3, 4층 방화문은 닫힘 상태가 불량하여 보수 필요 - 방화문에 설치된 도어체크는 일반형으로 설치 • 3, 4층 방화문 도어체크 • 지하 1층 주계단 방화문 도어체크, 지하 1층(물탱크실) 주출입구 및 비상출입구 방화문 도어체크	건축법시행령 제46조
○ 방화 구획 - 계단실에 방화구획이 되어 있지 않음(방화 구획 필요) • 3, 4층 방화문 하단 문틀 부분, 4층 에어컨 배관호스 지나간 곳	건축법시행령 제46조
○ 자동문 - 1층 자동문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와 정전이 됐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열리도록 되어야 함	
○ 피난안내도 - 피난안내도 전 층에 미비치	

## 4. 감사자 의견

공사 소방안전 점검결과, ♠사 ◆◆◆◆부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련규정에 따른 소방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하지 않았고 현황과악분야, 업무분야, 역량강화분야, 실태 점검분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계획으로만 그치는 등 현황과악과 실태점검을 소홀히 하였으며, 소방계획 작성 대상 31개 기관에 대해 비 감독직의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자위소방대 부적절 편성 운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화재가 발생한 □□지역본부 ■■■지사의 3개 기관은 화재발생 후 화재원인, 자산피해내용, 복구비용, 향후대책 등에 대한 결과 보고를 누락하였으며, ♠사 ◆◆◆◆부 또한 화재발생 기관에 대한 사후조치나 구체적 관리방안 없이 자산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지역본부의 경우 3,4층 가스보일러 주변 화재 위험이 있어 자동확산 소화기 추가 설치 필요 등이 소방안전 전문가로부터 지적되었다.

따라서, ① 소방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부 계약직 6급 김♣♣를 신분상 조치(문책: 주의)처분하고, ② 공사 소방안전관리의 체계적 계획수립과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한 매뉴얼 현행화가 요구되고 ③ 자체적으로도 자율 안전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부합된 소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④◇◇지역본부는 현장점검시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 받은 자동확산 소화기 추가설치와 자동화재탐지설비, 방화문, 피난기구, 피난안내도 등 지적사항을 보수 및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 Ⅲ.

##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건, 명, 원)

처분지시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건 명	처분요구			조치 기한	감사자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2018-39	♠사 ▽▽처	소방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업무처리 소홀			문책 (주의)	20일	정▼▼
2018-40	♠사 ◆◆◆◆부	화재발생에 따른 사후관리 및 소방안전관리 매뉴얼 정비	권고			2개월	이▷▷
2018-41	♠사 ◆◆◆◆부	소방계획 등 관리소홀	통보			1개월	백♡♡
	◇◇지역본부 □□□□처	소방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선			2개월	이▷▷

※ 처분요구: 4건(주의1건, 권고1건, 통보1건, 개선1건)

### Ⅳ

## 기타사항

- (지적사항)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처분 요구
- (감사결과)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및 e-감사시스템 등록, 경영공시 등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4부. 끝.



<별첨> 점검기관 감사반 현황

일자	점검기관	감사반	비고
계		2	
10. 11.(목)	◇◇지역본부	이▷▷ 백♡♡	
10. 12.(금)	□□지역본부	이▷▷ 백♡♡	
	□□지역본부 △△지사	이▷▷ 백♡♡	

일련번호	2018-39	감사자	국토정보직 3급 정▼▼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사 ▽▽처 ▽▽처장	처분요구일자	2018. 11.	회신기일	20일

##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 문 책 요 구

제 목 소방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업무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실 ◆◆◆◆부

문책 대상자 ♠♠♠♠실 ◆◆◆◆부 계약직 6급 김♠♠

문 책 종 류 문책(주의)

내 용

공사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제5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항 각 호4)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6항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1. 소방계획 수립 소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기관장의 책임) 제2항에 “기관장은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 있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제1항에 따라 소방계획서는 13가지 사항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 소방안전관리자 ◆◆◆◆부 과장 김♣♣가(이하 김♣♣ 라고 함)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시행한 소방계획서의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화재의 예방, 제3장 화재 진압, 제4장 소방안전관리 일반, 제5장 벌칙으로 되어 있으며 제1조(목적)에서부터 제18조(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등) 으로 구성하여 소방과 관련된 법조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제1항에 따라 소방계획서는 13가지 사항을 포함해서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는 소방계획서를 소방교육과 자위소방 조직 구성 등 일부 사항만 조문사이에 첨삭하였으며 불임 양식에 관련 내용을 채워 작성하였다.

## 2. 소방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계획수립 및 점검 소홀

5)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① 소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8.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9.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부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중기(’15 ~ ’19) 경영계획에 따라 “소방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김♣♣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립한 소방안전관리 계획은 [별표1]과 같이 현황파악 분야는 각 기관별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파악과 소방시설 자료취합, 소방훈련 점검실적을 취합하고, 업무분야는 소방안전관리 매뉴얼 업데이트 및 배포, 교육자료 배포, 각 기관 소방시설 점검이며, 역량강화 분야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교재와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기관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실태점검 분야는 2016년도에 1회 수립하였으며 부동산 관리계획 현장 점검 시 병행 실시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한편 김♣♣는 2017년도 소방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2018년도 소방안전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는 감사일 현재 각 기관별 소방안전관리자 현황은 조사하였으나 각 기관별 소방시설 자료, 소방훈련 및 점검실적을 조사하지 않았으며, 소방안전관리 매뉴얼 업데이트 자료 배포와 소방안전 교육 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

♠사에서 계획하는 “소방안전관리 계획”은 ♠사의 사옥뿐만 아니라 공사 전체 사옥에 대한 총괄적인 소방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본부 및 지사 사옥에 대한 소방계획 수립에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매년 시행하는 “소방안전관리 계획”은 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 현황 파악 이나 교육자료 배포 정도로 소방안전을 위한 포괄적이면서도 상세한 안전계획이 부족하며 ♠사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규정」 또는 「소방안전규칙」으로 운용해야할 형식으로 구성된 조문사이에 조직도나 비상연락망 등 조문과 관련한

사항을 첨삭하고, 붙임 표 양식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매년 ♠사 “소방계획서”로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해서 실시해 오던 전 기관의 소방안전시설 현황을 2017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파악하지 않고 있다.

### 3. 화재발생기관 사후조치 및 대책마련 소홀

2017. 6. 26. □□지역본부 ■■■지사 4층 옥탑 샤워실(불법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2018. 4. 12. □□지역본부 △△지사 1층 외부 창고(불법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2018. 7. 29. ◇◇지역본부 4층 회의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3개월 사이 화재가 3건이나 발생하였다.

이중 외부 불법건축물에서 화재가 2건이나 발생하였으나 공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김♣♣는 ◇◇지역본부 화재 시에만 지역본부에 전화로 화재 상황을 확인 하였을 뿐 별다른 확인이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소방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소방안전관리 담당자는 소방안전계획 수립과 사후관리등 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추후 소방안전관리계획 및 사후관리등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처장)은 공사 소방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화재발생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부 계약직 6급 김♣♣를 「직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신분상 조치(문책: 주의)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별표1] 연간 소방안전관리계획(2015년 ~ 2018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부 및 지사 소방안전관리 현황 파악</li> <li>○ 각 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자료 취합</li> <li>○ 각 기관 소방시설 자료 취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기관 소방안전관리 현황 조사</li> <li>○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조사</li> <li>○ 각 기관 소방시설 자료 취합</li> </ul>	계획 미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기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및 소방시설 조사</li> <li>○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에 따른 현황 조사</li> <li>○ 각 기관 소방시설 자료 취합</li> <li>○ 각 기관 소방훈련 및 점검실적 취합</li> </ul>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에 관한 사항</li> <li>○ 각 기관 소방합동 훈련 및 교육 실시</li> <li>○ 각 기관 소방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실시</li> <li>○ 각 기관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에 관한 사항</li> <li>○ 소방안전관리 매뉴얼 업데이트 및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안전관리 매뉴얼 UPDATE</li> <li>- 소방계획서 작성요령, 점검 의무사항 등</li> </ul> </li> <li>○ 소방안전 교육자료 배포</li> </ul>	계획 미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에 관한 사항</li> <li>○ 소방안전관리 매뉴얼 업데이트 및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계획서 작성요령, 점검 의무사항 등</li> </ul> </li> <li>○ 소방안전 교육 자료 배포</li> <li>○ 각 기관 소방시설 점검</li> </ul>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안전관리자 역량 강화</li> <li>○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재 배포</li> <li>○ 소방안전 교육자료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별 자체 교육 실시</li> </ul> </li> </ul>		계획 미수립	
실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기관 소방안전관리 실태 점검</li> <li>○ 부동산관리계획 현장 점검 시 병행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여부</li> <li>- 법적 실시 사항 준수 여부(작동기능점검, 소방종합정밀점검) 등</li> </ul> </li> </ul>	계획 미수립	

일련번호	2018-40	감사자	국토정보직 4급 이▷▷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사 ♠♠♠♠실 ◆◆◆◆부	처분요구일자	2018. 11.	회신기일	2개월

##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권 고

제 목 화재발생에 따른 사후관리 및 소방안전관리 매뉴얼 정비

관 계 기 관 ♠♠♠♠실 ◆◆◆◆부

내 용

### 1. 화재발생에 따른 사후관리 소홀

「부동산관리규칙」 제21조(권리보전 등) 제3항 분임책임자는 화재,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 등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이 훼손 또는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피해 정도 등의 내용을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에서는 201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3건의 화재사고가 있었으며, 2018년 7월 ◇◇지역본부 4층회의실, 2018년 4월 경기 △△지사 1층 외부창고, 2017년 6월 경기 ■■지사 4층 옥탑 샤워실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표] 화재발생 현황

일시	‘18. 7. 29.(일) 09:20분	‘18. 4. 12.(목) 13:20분	‘17. 6. 26.(월) 22:35분
관련기관	◇◇지역본부	경기 △△지사	경기 ■■지사
장소	4층 회의실	1층 외부창고	4층 옥탑샤워실
화재발생보고	‘18. 8. 2.	‘18. 4. 12.	‘17. 6. 28.
특이사항	초등대응 적절	불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
결과보고	없음	없음	없음

그런데 201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3건의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있었지만 화재발생 후 화재발생원인, 자산피해내용, 복구비용, 특이사항, 향후 대책 등에 대한 결과보고가 없었으며, ♠사 업무담당자 또한 화재발생에 따른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았다.

그 결과 공사의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부에서는 화재발생등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 없이 자산관리를 소홀하게 운영하고 있다.

## 2. 소방안전관리 매뉴얼 현행화 소홀

공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916호)」에 따라 ♠사, 지역본부 및 지사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매뉴얼」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에서 외관점검(소방시설 점검)은 보통 소방안전관리자가 실시하며, 매월 1회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한다고 되어 있으며, 붙임 3. 「공공기관 소방시설자체점검 등에 관한 고시」 외관 점검표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7. 7. 26. 소방시설 외관점검표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화 되지 않아 ♠사, 본부 및 지사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이전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그대로 이용하여 점검하고 있다.

또한 2018. 10. 11. LX옴부즈만 위원 및 소방점검 전문가로부터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컨설팅 등을 통해 공사 소방안전계획 및 매뉴얼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부에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소방안전 관리매뉴얼에 화재발생에 따른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현행화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부장)은 ①공사 부동산 등 화재 발생에 따른 자산관리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시고,

②소방안전관리 업무 매뉴얼을 관련규정에 맞게 현행화 하고, 공사 소방안전관리 계획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 매뉴얼의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매뉴얼의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18-41	감사자	국토정보직 5급 백♡♡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사 ♠♠♠♠실 ◆◆◆◆부	처분요구일자	2018. 10.	회신기일	1개월

##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 통 보

제 목 소방계획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실 ◆◆◆◆부

내 용

공사는 각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시설안전관리)에 따라 관리책임자는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상태를 점검하게 되어 있다.

공사 소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관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소방계획 관리 소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기관장의 책임) 제2항에 따르면 “기관장은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 있다.또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제1항에 따라 “소방계획서는 13가지 사항6)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6)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① 소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그러나, [표 1]과 같이 소방계획 수립대상<sup>7)</sup> 31개 기관 중 23개 기관(74.1%)만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였고, 8개 기관(25.8%)이 미작성 하였으며, 작성한 기관 또한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2·3급 규모) 서식으로 작성하지 않아 통일성이 없고, 소방계획서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13가지 항목 중 특히 중요한 피난계획이 13개 기관(56.5%)만 작성되어, 화재발생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안내 역할이 없어 인사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표 1] 기관별 소방계획서 작성현황 집계

(2018. 9. 30.일 현재, 단위:소)

구 분	소방계획서 작성			피난계획도 작성			비고
	계	작성	미작성	소계	작성	미작성	
소방계획	31	23 (74.1%)	8 (25.8%)	23	13(56.5%)	10(43.5%)	

\*별표1: 2018년 기관별 소방계획 수립현황 1부.

## 1.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관리 소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제1항에 따르면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표 2]와 같이 전체 31개 기관 중 감독직에 있는 직원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기관의 비율은 10개 기관(32.3%)이고, 비 감독자로 볼 수 있는 직원 선임이 21개 기관(67.7%)으로 화재발생 시 총괄 지휘 통제에 한계와 전문성 미흡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8.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9.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7) 연면적 1,000㎡ 이상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설비(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가 있는 기관

으로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2] 기관별 소방안전관리자 직급 현황집계**

(2018. 9. 30.일 현재, 단위: 소)

구 분	소방안전관리자 직급										
	계	감독 직급				비감독 직급					
		소계	운영지원 처장	지사장	수석 팀장	소계	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소방안전 관리자	31	10 (32.3%)	4 (12.9%)	2 (6.5%)	4 (12.9%)	21 (67.7%)	6 (19.4%)	9 (29.0%)	2 (6.5%)	1 (3.2%)	3 (9.7%)

\*별표2: 2018년 기관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현황 1부.

## 2. 자위소방대 편성 관리 소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6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발생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위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자위소방대의 임무)<sup>8)</sup> 제3호에 따르면 “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안전 관리자는 지휘반에 편성되어야 한다.

8) 제13조(자위소방대의 임무) 자위소방대의 대장·부대장과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영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4. 진압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5. 구조구급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응급처치한다.
6. 대피유도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표 3]과 같이 31개 대상기관 중 23개 기관(74.1%)만 자위소방대를 편성하였고, 8개 기관(25.8%)이 미편성 하였으며, 편성한 기관도 소방안전 관리자를 11개 기관(47.8%)만 지휘반에 배치하여,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기관별 자위소방대 편성현황 집계**

(2018. 9. 30.일 현재, 단위:소)

구 분	자위소방대편성			소방안전관리자 편성현황			비고
	계	편성	미편성	소계	지휘반	비 지휘반	
자위소방대편성	31	23 (74.1%)	8 (25.8%)	23	11 (47.8%)	12 (52.1%)	

\*별표3: 2018년 기관별 자위소방대 편성현황 1부.

따라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발생시 초기 자율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관계기관 의견** ◆◆◆◆부에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기관별 소방 계획 수립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부장)은 자율 안전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부합된 소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하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별표1]

## 2018년 기관별 소방계획 수립현황

(2018.9.30.일 현재)

No.	기관명(본부)	지사	연면적(m2)	수립	미수립	계획수립일	비고
계		31		23	8		
1	♠사	♠사	13,831.99	○		2018-03-13	
2	♥♥♥♥♥원	▣▣▣원	2,020.62	○		2018-02-20	
3	♣♣지역본부	본부	7,542.67	○		2018-03-28	강정식 사원에서 담당자 변경
4	♣♣지역본부	▤▤▤▤지사	1,287.90	○		2017-12-26	
5	♣♣♣♣지역본부	본부	2,231.76	○		2018-09-06	
6	♣♣♣♣지역본부	▥▥지사	879.62		○		건물연면적 1,000㎡이하 이나 ,자동 화재탐지기 설치로 선임대상, 동일건물사용울산지사포함면적
7	◇◇지역본부	본부	1,300.54	○		2018-01-04	
8	□□지역본부	본부	6,806.16		○		2018.10.08일 수립
9	□□지역본부	△△지사	1,348.10	○		2018-01-10	
10	□□지역본부	◎◎지사	3,639.48		○		
11	□□지역본부	◇◇지사	1,967.00	○		2018-08-30	
12	□□지역본부	◆◆지사	1,290.72	○		2018-02-05	
13	☆☆지역본부	본부	1,183.20	○		2018-04-02	
14	☆☆지역본부	▲▲지사	4,986.51		○		김영두 담당관에서 담당자 변경
15	☆☆지역본부	▽▽▽▽지사	813.92		○		건물연면적이 1000㎡이하 이나, 스프링클러 소화설비설치로선임대상
16	★지역본부	본부	2,421.90	○		2018-01-24	박홍남 담당관에서 담당자 변경
17	○○○○지역본부	본부	2,963.48	○		2018-04-02	
18	○○○○지역본부	□□지사	1,695.34	○		2018-02-05	
19	○○○○지역본부	▣▣지사	1,529.65	○		2018-08-29	
20	○○○○지역본부	▲▲지사	665.34	○		2018-06-07	건물연면적이 1000㎡이하 이나, 스프링클러 소화설비설치로선임대상
21	○○○○지역본부	☆☆지사	1,546.22	○		2018-06-11	신규사옥
22	○○○○지역본부	♣♣♣♣지사	1,133.69	○		2018-07-05	이헌영 담당관에서 담당자 변경
23	◆◆지역본부	본부	2,936.13	○		2018-01-08	
24	▣▣▣▣지역본부	본부	2,996.40	○		2018-08-29	
25	▣▣▣▣지역본부	♣♣지사	1,210.66	○		2018-06-19	
26	▣▣▣▣지역본부	♣♣지사	994.22		○		건물연면적 1,000㎡이하 이나, 자동화재탐지기설치로선임대상
27	●●●●지역본부	본부	2,007.38		○		최동광 팀장에서 담당자 변경
28	▤▤지역본부	본부	6,631.02	○		2018-06-05	
29	▤▤지역본부	◆◆지사	2,354.58		○		◆◆지사 신축으로 추가
30	▣▣▣▣지역본부	▣▣▣▣지사	1,026.88	○		2018-02-21	
31	▣▣▣▣지역본부	●●●지사	1,456.44	○		2018-09-05	양세웅에서 담당자 변경

[별표2]

## 2018년 기관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현황

(2018.9.30.일 현재)

No.	기관명(본부)	지사	연면적(m2)	소방안전관리자	직위	직급	자격취득일	비고
계				31				
1	♠사	♠사	13,831.99	김♠♠	*리	계약직6급		
2	♥♥♥♥♥♥♥원	♣♣♣원	2,020.62	정◎◎	*원	기획경영직7급(을)	2016-12-02	
3	♣♣지역본부	본부	7,542.67	강△△	*장	기획경영직4급	2018-04-20	
4	♣♣지역본부	☒☒☒☒지사	1,287.90	이◁▷	*장	국토정보직5급	2018-01-26	
5	♣♣♣♣지역본부	본부	2,231.76	강▷▷	***장	기획경영직3급	2015-06-12	
6	♣♣♣♣지역본부	☒☒지사	879.62	최◇◇	*장	국토정보직4급	2018-09-28	
7	◇◇지역본부	본부	1,300.54	박◎◎	***장	기획경영직3급	1995-06-12	
8	□□지역본부	본부	6,806.16	정△△	*장	기획경영직4급	2017-05-19	
9	□□지역본부	△△지사	1,348.10	김◁▷	*장	국토정보직5급	2009-09-04	
10	□□지역본부	◎◎지사	3,639.48	성▷▷	*장	국토정보직5급	2017-04-21	
11	□□지역본부	◇◇지사	1,967.00	위◇◇	*장	국토정보직5급	2015-06-26	
12	□□지역본부	◆◆지사	1,290.72	이◎◎	*장	국토정보직5급	2014-03-14	
13	☆☆지역본부	본부	1,183.20	오△△	****장	기획경영직3급	2017-09-22	
14	☆☆지역본부	▲▲지사	4,986.51	백◁▷	***장	국토정보직4급	2018-07-13	
15	☆☆지역본부	▽▽▽▽지사	813.92	신▷▷	*장	국토정보직5급	2017-04-14	
16	★지역본부	본부	2,421.90	김◇◇	****장	기획경영직2급	2009-11-20	
17	○○○○지역본부	본부	2,963.48	이◎◎	*원	기획경영직7급(갑)	2017-05-26	
18	○○○○지역본부	□□지사	1,695.34	강△△	*장	국토정보직4급	2016-05-13	
19	○○○○지역본부	▣▣지사	1,529.65	임◁▷	*장	국토정보직5급	2013-02-22	
20	○○○○지역본부	▲▲지사	665.34	노▷▷	*장	국토정보직5급	2018-06-01	
21	○○○○지역본부	☆☆지사	1,546.22	김◇◇	*장	국토정보직4급	2017-05-19	
22	○○○○지역본부	♠♠♠♠지사	1,133.69	송◎◎	*장	국토정보직6급	2018-09-28	
23	◆◆지역본부	본부	2,936.13	박△△	****장	기획경영직2급	2011-12-09	
24	▣▣▣▣지역본부	본부	2,996.40	최◁▷	*원	기능직2급	1992-12-30	
25	▣▣▣▣지역본부	♣♣지사	1,210.66	김▷▷	*장	국토정보직4급	2018-03-09	
26	▣▣▣▣지역본부	♣♣지사	994.22	안◇◇	*장	국토정보직5급	2016-07-15	
27	●○○●지역본부	본부	2,007.38	김◎◎	***장	기획경영직3급	2018-07-27	
28	☒☒지역본부	본부	6,631.02	김△△	****장	기획경영직2급	2016-05-27	
29	☒☒지역본부	◆◆지사	2,354.58	이◁▷	*장	국토정보직5급	1993-12-24	
30	▣▣▣▣지역본부	▣▣▣▣지사	1,026.88	강▷▷	**장	국토정보직2급	2016-05-20	
31	▣▣▣▣지역본부	●○○●지사	1,456.44	안◇◇	**장	국토정보직3급	2018-08-31	

[별표3]

## 2018년 기관별 자위소방대 편성현황

(2018.9.30.일 현재)

No.	기관명(본부)	지사	소방안전 관리자	자위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편성현황	적정여부
				편성	미편성		
계		31		23	8		11
1	♠사	♠사	김♣♣	○		부대장아래 별도편성	○
2	♥♥♥♥♥♥원	▣▣▣원	정○○	○		소화팀원으로 편성	
3	♣♣지역본부	본부	강△△	○		구체적 성명 편성 없음	
4	♣♣지역본부	▤▤▤지사	이<<<	○		진압반원으로 편성	
5	♣♣♣지역본부	본부	강>>>	○		부대장아래 별도편성	○
6	♣♣♣지역본부	▨▨▨지사	최◇◇	○		구체적 성명 편성 없음	
7	◇◇지역본부	본부	박○○	○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누락	
8	□□지역본부	본부	정△△		○		
9	□□지역본부	△△지사	김<<<	○		부대장으로 편성	○
10	□□지역본부	◎◎지사	성>>>		○		
11	□□지역본부	◇◇지사	위◇◇	○		진압반원으로 편성	
12	□□지역본부	◆◆지사	이○○	○		부대장으로 편성	○
13	☆☆지역본부	본부	오△△	○		부대장아래 별도편성	○
14	☆☆지역본부	▲▲지사	백<<<		○		
15	☆☆지역본부	▽▽▽▽지사	신>>>		○		
16	★지역본부	본부	김◇◇	○		부대장으로 편성	○
17	○○○○지역본부	본부	이○○	○		지휘반원으로 편성	
18	○○○○지역본부	□□지사	강△△	○		지휘반원으로 편성	
19	○○○○지역본부	▣▣지사	임<<<		○		
20	○○○○지역본부	▲▲지사	노>>>	○		지휘반원으로 편성	
21	○○○○지역본부	☆☆지사	김◇◇	○		지휘반원으로 편성	
22	○○○○지역본부	♣♣♣♣지사	송○○	○		진압반원으로 편성	
23	◆◆지역본부	본부	박△△	○		부대장으로 편성	○
24	▣▣▣▣지역본부	본부	최<<<	○		지휘반원으로 편성	
25	▣▣▣▣지역본부	♣♣지사	김>>>	○		부대장아래 별도편성	○
26	▣▣▣▣지역본부	♣♣♣지사	안◇◇		○		
27	●●●●지역본부	본부	김○○		○		
28	▤▤지역본부	본부	김△△	○		부대장으로 편성	○
29	▤▤지역본부	◆◆지사	이<<<		○		
30	▣▣▣▣지역본부	▣▣▣▣지사	강>>>	○		대장으로 편성	○
31	▣▣▣▣지역본부	●●●지사	안◇◇	○		대장으로 편성	○



일련번호	1-1	감사자	국토정보직 3급 정▼▼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지역본부 운영지원처	처분요구일자	2018. 11.	회신기일	2개월

##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개 선

제 목 소방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처

내 용

◇◇지역본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소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본부는 2018년도 소방계획을 수립하여 2018. 3.에 외주업체를 통해 종합정밀점검과 같은 해 9월에 외주업체에게 작동기능점검을 받고, 외관점검은 매월 자체점검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붙임1] 내용과 같이 소방안전 점검 결과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연간 2회씩 소방안전점검을 하였으나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곳에 초동대응 준비가 미비하고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감지기 배선을 하는 등 소방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지역본부 운영지원처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관련지적사항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성과감사 현장점검시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 받은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방화문, 피난기구, 피난안내도 등 지적사항을 보수 및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적사항

지적사항	화재안전기준
<p>○ 소화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확산 소화기 미설치로 3, 4층 가스보일러 주변 화재 위험으로 자동확산 소화기 추가 설치 또는 계획에 따른 가스보일러 제거</li> </ul>	NFSC* 101 제4조
<p>○ 자동화재탐지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지기 배선은 송배전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으로 확인, 전층 (지하1층 ~ 지상 4층) 감지기 선로에 대한 보수 필요</li> </ul>	NFSC 203 제11조
<p>○ 피난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강기는 사용 시 신속하고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하나 그렇지 못함(3, 4층 재설치 필요)</li> </ul>	NFSC 301 제4조
<p>○ 유도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도등은 피난방화문에 설치해야 하나 2층 처장실 좌측 문입구 피난구 유도등은 불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제거 요함</li> </ul>	NFSC 303 제4조
<p>○ 방화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화문은 화재 시 자동으로 닫혀 폐쇄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나 3, 4층 방화문은 닫힘 상태가 불량하여 보수 필요</li> <li>- 방화문에 설치된 도어체크는 일반형으로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 4층 방화문 도어체크</li> <li>• 지하 1층 주계단 방화문 도어체크, 지하 1층(물탱크실) 주출입구 및 비상출입구 방화문 도어체크</li> </ul> </li> </ul>	건축법시행령 제46조
<p>○ 방화 구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단실에 방화구획이 되어 있지 않음(방화 구획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 4층 방화문 하단 문틀 부분</li> <li>• 4층 에어컨 배관호스 지나간 곳</li> </ul> </li> </ul>	건축법시행령 제46조
<p>○ 자동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 자동문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와 정전이 됐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열리도록 되어야 함</li> </ul>	
<p>○ 피난안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난안내도 전 층에 미비치</li> </ul>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